

국제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 뉴스레터

2026년
03월

영국, 화장품 규정 개정: 금지 성분 및 제한 성분 추가

2026년 2월 9일, 영국 정부는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개정안(The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EC) No 1223/2009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Amend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s) (No. 2) Regulations 2026)을 채택하여 헥실살리실레이트를 제한 성분 목록에 추가하고, 13가지 CMR 물질을 금지 성분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의 영국 시장 유통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화장품 규정 개정안은 2026년 2월 9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헥실살리실레이트 (Hexyl Salicylate) 제한

2026년 8월 15일부터 헥실살리실레이트는 제한 성분으로 규제되어 제품 유형 및 사용 연령대에 따른 최대 농도 제한이 적용된다.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해당 날짜 이전에 출시된 경우에 한해 2027년 2월 14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 CMR 물질 규제 강화

2027년 3월 23일부터 발암성돌연변이 유발성생식독성(CMR) 물질로 분류된 13가지 성분이 금지 성분에 추가된다. 해당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영국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2027년 9월 22일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연번	신규 금지 성분	CAS 번호
1761	Sodium 3-(allyloxy)-2-hydroxypropanesulphonate	52556-42-0
1762	N,N'-methylenediacylamide	110-26-9
1763	1,3-dioxan-5-ol 과 1,3-dioxolan-4-ylmethanol의 반응 혼합물	/
1764	1,4-dichloro-2-nitrobenzene	89-61-2
1765	Pyraclostrobin (ISO); methyl N-(2-[[1-(4-chlorophenyl)-1H-pyrazol-3-yl]oxymethyl]phenyl) N-methoxy carbamate	175013-18-0
1766	Tert-butyl 2-ethylperoxyhexanoate	3006-82-4
1767	Fenpropidin (ISO); (R,S)-1-[3-(4-tert-butylphenyl)-2-methylpropyl]piperidine	67306-00-7
1768	2-ethylhexanoic acid, monoester with propane-1,2-diol	85114-00-7
1769	α,α'-propylenedinitrildi-o-cresol	94-91-7
1770	Ozone	10028-15-6
1771	2-phenylpropene; α-methylstyrene	98-83-9
1772	Silver (nano) [입자 크기 > 1 nm ≤ 100 nm]	7440-22-4
	Silver (massive) [입자 크기 ≥ 1 mm]	
1773	Dinitrogen oxide	10024-97-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uk-amends-cosmetics-regulation-with-new-ingredient-prohibitions-and-restrictions>

캐나다,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CNF 보고 의무 완화

2026년 3월 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HC)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의 표시 방침을 업데이트하고,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에서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농도 기재 선택 사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라벨 표시 및 성분 신고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H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CNF에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정확한 농도 또는 농도 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된다. 단, CNF 상의 성분 신고는 필수로 유지되며 라벨에서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기준 또한 변경되지 않는다(씻어내는 제품(Rinse-off) 0.01% 초과, 바르는 제품(Leave-on) 0.001% 초과 시 성분 목록에 표시), 또한 Cosmetic Ingredient Hotlist에 등재되어 특정 농도 제한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유클립투스, 캠퍼, 메틸 살리실레이트 등)은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CNF 상 농도 정보 기재 의무가 유지된다. 해당 업데이트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2026년 4월 12일부터 2027년 4월 11일까지는 준수 지원(1단계)이, 2027년 4월 12일부터는 표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정식 규제 집행(2단계)이 이루어진다.

캐나다 보건부는 이번 조치가 정책적인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화장품 규정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변경으로 향료 조성 성분 등의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산업계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canada-to-ease-fragrance-allergen-concentration-reporting-on-cosmetic-notification-forms>

EU SCCS, 화장품 성분 4건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2026년 2월 10일, 유럽 소비자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베이직 블루 99, 베이직 브라운 16, 티오메르살 및 페닐수은염에 대한 안전성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SCCS는 기존 예비 평가 결과를 재확인하며, 해당 물질들이 관련 화장품 제품군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분 별 상세 평가는 다음과 같다.

-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Prostaglandin Analogues, PGA): 속눈썹 및 눈썹 성장을 위한 화장품에 사용되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DDDE, IPCP, MDN에 대해, SCCS는 이들PGA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 베이직 블루 99 (Basic Blue 99): 비산화성 염색약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부 과민 반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 베이직 브라운 16 (Basic Brown 16): 비산화성 염색약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이 시사되어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티오메르살 및 페닐수은염 (Thiomersal and Phenylmercuric salts): 눈 관련 제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수은계 방부제이나, 수은 체내 축적 및 독성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허용 농도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eu-sccs-identifies-safety-risks-in-prostaglandin-analogues-basic-blue-99-basic-brown-16-thiomersal-and-phenylmercuric-salts>

캐나다, 사이클로헥산아민에 SNAC 규정 적용

2026년 2월 25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관보 제2부(제160권 제4호)를 통해 'Amending the Domestic Substance List (SOR/2026-15)' 규정을 공표하고, 사이클로헥산아민(CAS No.108-91-8)에 대해 '중대한 신규 활동(Significant New Activity, SNAC)'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난 2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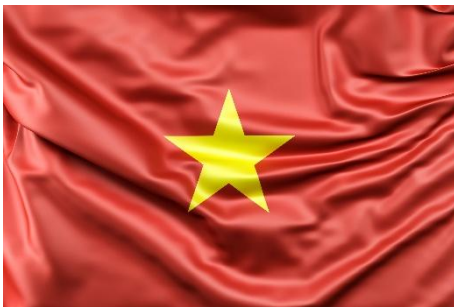


규정 발효 이후에 사이클로헥산아민을 화장품 및 소비재에 새롭게 사용하거나 노출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은 사전신고(Significant New Activity Notification, SNAN)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개시 최소 90일 전에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접수 후 90일 이내에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규정은 사이클로헥산아민이 0.1wt% 이상 함유된 화장품의 제조 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연간 총 수입량이 10kg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단, 에어로졸 헤어스프레이 제품, 연구개발 목적 사용, 특정 시설 내 중간체, 수출 전용 제품 등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및 인체 노출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화장품 및 소비재 관련 기업은 해당 원료의 사용 여부와 함량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canada-applies-significant-new-activity-provisions-to-cyclohexanamine-in-cosmetics>

베트남, 화장품 광고 사전 승인 제도 폐지



2026년 2월 12일,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회람 03/2026/TT-BYT을 발표하여 화장품 광고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했다. 해당 조치는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기업이 광고 진행 전 보건당국에 광고 내용을 제출하고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제도 폐지 이후에는 화장품 제품 신고가 완료된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광고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광고 주체 기업에 부여된다.

2026년 2월 15일 이전에 발급된 광고 내용 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며, 기존에 접수된 광고 승인 신청 건은 접수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광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광고 내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vietnam-abolishes-the-approval-process-for-cosmetic-advertising-content>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